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설치한 혁신행정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5년 2월 17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8급 1명) 조정하고 해당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7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 중 “(제8조제1항 관련)”을 “(제8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신설한다.

총리령 제159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76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2월 17일”을 “2025년 2월 1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은 2026년 2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2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으로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128
정무직 계	1
위원장(차관급)	1
일반직 계	127
고위공무원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1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 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 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 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4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 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 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41
기상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주사·통계주사·감사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 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 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환경주사·항공주 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	37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 주사보	8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u><단서 신설></u>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u>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u>(제8조제1항 관련)</u>	<u>(제8조제1항 본문 관련)</u>	
·	·	·	
·	·	·	